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51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	3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2.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할당 대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파법은 위 요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할당이 있을 때마다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재할당 대가 결정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되어 왔음.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부과는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1.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

가. 개정안 요지

-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현행법 제11조제3항 후단1))”하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6조제4항), 재할당 대가의 산정 시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직전 할당 대가에 주파수의 이용 현황, 이용 기간, 대역폭 및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 재할당 대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1)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 (재할당) ① ~ ③ (생략)	제16조 (재할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u>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u> 를 준용하되,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 ----- ----- <u>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u> 을 ----- -----.
<신설>	⑤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 하는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한 직전 할당 대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 현황, 이용 기간 및 대역폭 2.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현행	개정안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공하는 기술방식(국제전기통신연합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에 따른 구분에 의한다)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대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

다. 검토사항

☐ 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제도 개요

- 현행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²⁾으로 주파수할당 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①대가할당과 ②심사할당으로 구분되고, 그 외에 ③재할당, ④추가할당이 있음.

2) 「전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 주파수할당 유형3) >

구 분	의 미
대가할당	· 주파수할당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이용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심사할당	·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할당하는 방법
재할당	·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가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것
추가할당	·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에게 해당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할당하는 방법

○ 또한 현행법 제15조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할당 시 대가할당의 경우 20년, 심사할당의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정하고 있고, 재할당 및 추가할당의 경우는 이용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가할당 또는 심사할당

3)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재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4) 「전파법」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현행법 제15조를 따르고 있음.

-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권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파수의 계속적인 이용 및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고려하여 재할당 제도를 두고 있음.

□ 주파수 재할당 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 및 과거 재할당 사례

- 현행법 제16조제4항⁵⁾ 및 「전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⁶⁾에 따르면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 재할당 절차 및 대가 산정 등에 관하여 ‘할당’ 시의 규정을 준용(참고자료 1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 할당 시의 대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현행법 제11조제3항⁷⁾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5) 「전파법」 제16조(재할당)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6) 「전파법 시행령」 제18조(재할당)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7)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또한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8)에서는 시행령 별표39) (참고자료 2 참조)에 따라 산정하되, 경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 주파수 특성 및 대역폭, 주파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고, 경매사례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3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파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재할당 대가 산정방법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재할당의 경우 매년 별도의 연구반을 구성하여 그 대가를 산정해왔음.

8)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전파법 시행령」 별표3 요약

주파수할당 대가 = ①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 + ②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

① 예상매출액 기준 납부금 :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전체 예상 매출액 × x(1.4%) × 무선투자촉진계수 × 주파수 할당률

②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 : 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 × y(1.6%)

- 현재까지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은 2011년, 2016년 및 2021년 세 차례 있었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도 재할당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6월에 재할당여부를 발표할 예정임. 그동안의 주파수 재할당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파수 재할당 현황>

구 분		대역 및 대역폭	이용 기간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11.7월	SKT	800MHz대역 30MHz폭	10년	7,665억원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산정
	KT	1.8GHz대역 20MHz폭	10년	3,865억원	
	LGU+	1.8GHz대역 20MHz폭	10년	3,417억원	
'16.12월	SKT	2.1GHz대역 40MHz폭	5년	5,685억원	경매가와 시행령 별표3의 산정방식을 평균하여 산정
	KT	2.1GHz대역 40MHz폭	5년	5,685억원	
'21.7월	SKT	800MHz대역 20MHz폭	5년	2,272억원	경매가 및 가치하락 요인 반영
	KT	900MHz대역 20MHz폭	5년	1,413억원	경매가 및 가치하락 요인 반영
		1.8GHz대역 35MHz폭	5년	5,478억원	경매가 및 가치하락 요인 반영
	LGU+	800MHz대역 20MHz폭	5년	2,272억원	경매가 및 가치하락 요인 반영
'21.12월	SKT	1.8GHz대역 35MHz폭	5년	5,478억원	경매가 및 가치하락 요인 반영
		2.1GHz대역 40MHz폭	5년	4,117억원	직전 재할당대가 및 가치하락 요인 반영
	KT	2.1GHz대역 40MHz폭	5년	4,117억원	직전 재할당대가 및 가치하락 요인 반영
	LGU+	2.1GHz대역 40MHz폭	5년	4,381억원	경매가 및 가치하락 요인 반영
		2.6GHz대역 40MHz폭	5년	2,169억원	경매가 및 가치하락 요인 반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산정된 2011년의 재할당 대가(10년 이용)와 경매가를 고려한 2016년 및 2021년(5년 이용)을 비교해보면 2011년도의 재할당 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는 과거 경매가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경매가 반영¹⁰⁾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따른 재할당 산정방식이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할당 대가 결정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한 점,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음.

□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

- 개정안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대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입장의 차이가 크고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한 직전 할당 대가에 ①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 현황, 이용 기간 및 대역폭과 ②생애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10) 대통령령(「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반영되고 있음

감소분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령과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주파수 재할당 관련 현행법령과 개정안 비교>

현행법령	개정안
「전파법」	
○ 제16조제4항 - 재할당 시 정부 산정 대가할당 규정(제11조)을 준용함 -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u>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u>(제11조제3항 후단)	○ 안 제16조제4항 - 재할당 시 정부 산정 대가 할당 규정(제11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지 않음 ○ 안 제16조제5항 - 재할당 시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u>직전 할당 대가에</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함 1.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현황, 이용기간 및 대역폭 2.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재할당 대상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방식(국제전기통신연합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에 따른 구분에 의한다)의 <u>생애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u>
○ 제16조제6항 -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안 제16조제7항 - 재할당 대가의 <u>구체적인 산정방식</u>,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전파법 시행령」	
○ 제14조 -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경매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함 1. <u>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u>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외의 경우 별표3을 적용함	○ 개정안 의결 시 구체적인 산정방식 규정 필요

- 개정안은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대상 주파수의 ‘직전 할당 대가’를 고려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직전 할당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가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참고로 현행은 직전 할당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할당 대상 주파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경매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환경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감소분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국가의 판단 재량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자구 측면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 규정과 관련하여 전문용어인 ‘IMT¹¹⁾’의 직접적인 사용은 일반국민에게 어려운 용어이므로 괄호 안에 원어를 풀어쓰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11) IM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전파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 등에서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주파수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동의하지 않는 입장임.

□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

-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파수 할당 또는 재할당과 같이 법의 적용대상이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경우, 어느 시점이나 단계부터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¹²⁾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847.

※ 참고자료

1. 주파수 재할당 관련 규정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이 조에서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또는 위성망 보호 등(위성주파수 할당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최저경쟁가격을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2.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재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2. 「전파법 시행령」 별표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주파수할당 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2.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 x × 무선투자촉진계수 × 주파수 할당률

3.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 × y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할당으로서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 예측이 곤란한 경우

나.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1/2 이상의 대역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다. 동일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기술적 특성이 현저히 다른 주파수 대역을 새롭게 할당하는 경우

단위 대역폭당 단가 ×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대역폭

비 고

1. 제2호 산식에서 "시장"이란 역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집단을 말한다.
2. 제2호 산식의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에서 제4호에 따라 할당대가를 산정한 주파수 대역폭에 따른 예상매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제2호 산식에서 "무선투자촉진계수"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전파기술발전 및 무선

국 구축·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무선투자촉진계수"의 최대치는 1로 한다.

4. 제2호 산식 및 제3호 산식에서 "x" 및 "y"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값을 말한다. 이 경우 x와 y를 합한 값은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2호 산식에서 "주파수 할당률"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값을 말한다.

$(\text{개별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 \times \text{대역폭 조정계수}) \div (\text{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 대역폭} \times \text{대역폭 조정계수})$

가. "대역폭 조정계수"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할당대상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이 경우 "대역폭 조정계수"의 최대치는 1로 한다.

나.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대역폭"에서 제4호에 따라 할당대가를 산정한 주파수 대역폭은 제외한다.

6. 제3호 산식에서 "실제매출액"이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7. 제4호 산식에서 "단위 대역폭당 단가"란 할당대상 주파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특성, 기대수익 및 서비스 대상 인구 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235